

March 02, 20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2.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계류 중이던 2014. 11. 18.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법적 정합성 제고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제3조의 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가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는 존재임을 명시하고(제15조 제1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동조 제2항). 다만 ‘처리’에 대한 정의규정(제2조 제13호)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처리’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조사 및 처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15조).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32조 제4항 및 제5항).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제공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9조의 2).

한편,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회사들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3배 이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43조 제2항 및 제3항), 구체적 피해액 입증이 없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등(제43조의 2)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4.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은 금지됩니다(제17조).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0조의2). 위 개정안 시행당시 상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부칙 제9조).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효성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조치를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직위와 업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과태료 등의 제재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법률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 또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사용한 경우 또는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2조의 2).

5. 신용조회업 및 신용집중체계 개편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제25조, 제25조의2), 신용조회회사의 부수 업무를 제한하고 영리 목적의 겸업을 금지하며,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항, 제22조의3).

6. 맺음말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되었고,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는바, 본 개정안은 2015. 3. 공포절차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단, 제20조의2 등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다만 이미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올해 상반기 위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정보법은 금년 내에 다시 한 번 전면 개정되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강현정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80 | E-Mail. hjka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